「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 10. 05 (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9. 10.12 (월)

다. 상정일자 : 2009. 10.12 (월) 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산림자원의 보존 ,육성,연구,활용 등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활과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수도 평창」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기본 이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산림수도 평창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산림수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마. 산림수도정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9조)

바. 산림수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5조)

마. 산림수도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3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노재철)

가.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중요 자산인 산림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

하고, 이를 통한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수도"의 면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산림수도의 역할"은 산림환경을 모범적으로 보존·육성·연구·활용하며,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인 중심역할이라고 규정하고,

○ 이와같은 산림수도 구현을 위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군수는 산림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추진시 산림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산림환경 영향검토,
도시경관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녹화 사업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자원을 지원하거나 산림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의 세부적인 추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산림정보를 공개하며,
공익법인 설립하거나 산림수도 백서 작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 특히, 산림수도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림수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재정지원, 국제협력 강화,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강구, 기금조성 등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2007.12.31기준의 산림기본통계를 보면,

○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119,914ha로서 전체면적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이 자생하여 상대적으로 전국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난 5.13일자 "산림수도 선포식"을 통하여 산림의 중심지역으로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와 대비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음.

○「산림기본법」제4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산림의 보존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같은 우리군의 자연환경적인 여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례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본 조례의 공익적 성격을 우선하여 수목이나 임야 등 개인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남용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며,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 1부.